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6-124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정부의 보조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조금이 수반되는 에너지 사업의 재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ㅇ 상위 법령인 「에너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현행화 하고,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 국고보조금 추가 신설(안 제3조제4호)
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고보조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보급·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세입)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고보조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보급·지원 사업 5. ~ 9. (생 략)	제4조(세출) ----------. 1. ~ 3. (현행과 같음)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보급·지원 사업 5. ~ 9.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

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断热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 동 빈

[붙임 3]

현 행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5.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426호, 2024. 4. 12.,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경제정책과), 044-300-40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4. 1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24. 4. 12.>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력발전(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2. 18.><개정, 2024. 4. 12.>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보급·지원 사업
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6.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위탁사업
7.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管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개선 사업<개정, 2024. 4. 1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5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생략)

㉖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㉗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605호, 2020. 12. 18.><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에너지계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26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본다.